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 16.(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1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월 5일

3. 제안이유

-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청북도선수단의 소속감 증대를 통한 결속 강화와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출전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문에 사용된 관련 법률 제명을 표기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 규정에 담도록 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 조항 제목에 조문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담기도록 변경함.(안 제3조)
- 학생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선수단의 사기 진작 및 소속감,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해 대회 출전복 지급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 충청북도교육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제2항의 근거에 따라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통일된 디자인의 단복과 모자 등을 지급해왔음.
-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고 매년 같은 기관 및 단체에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회에 출전하는 충청북도 대표선수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출입 기자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충청북도체육회 임직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제2항 충청북도체육회 감독기관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 충청북도체육회 출입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제4항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항11호 경기단체 임직원 및 운동부 지도자

- 이에 대해, 지난 2022.5.1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령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선수단 등에 단복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지도자 및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을 제외한 관계자들에게 출전복을 지급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공직자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의견 (2022.11.8.) 이 있었음.

나. 주요 내용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제5호에 “선수단” 을 ‘ 「학교 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 및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출전복을 지급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또한, 안 제3조제3항에 “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해, 체육대회에 선수단으로 출전하는 경우에 출전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 같은 개정 사항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¹⁾ 및

1)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1)에 따른 것으로, 출전복 지급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²⁾, 출전복 지급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선수단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출전복(단체복)이 주는 소속감, 사명감, 자긍심 향상 등 유의미하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급 과정이나 활용상 문제점³⁾이 발생할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소요예산 수립 시 지급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차. (생략)

- 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3.3.자 2017과 2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공연 제작사 대표가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식사를 하고 음식 값을 지불한 것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위반자들에게 금품 가액에 2배를 상회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임.
- 3) ‘선수들도 외면하는 수상한 단체복’ (MBC경남, 2022.9.20. 보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